

##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 1 목적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역량심사'를 도입하여 기관의 기본역량 요건을 사전에 검증 추진
  - \* 민간위탁사업기관 선정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단계로 사업참여 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요건에 중점을 두고 심사
  - \*\* 기본역량심사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의 변경 명칭임

### 2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2022. 4.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38호)

### 3 기본역량심사 운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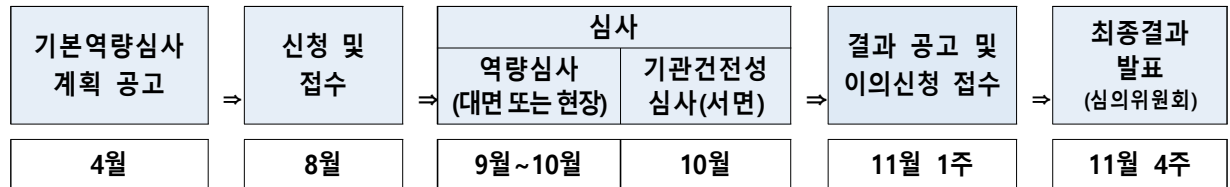
## 4 추진체계

### ① 실적기관



\* 이의신청은 기본역량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 ②신규기관



\* 이의신청은 기본역량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 5 기본역량심사 신청 및 접수

### 5-1. 기본역량심사 대상사업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추진중인 4개 민간위탁사업

사업명	사업부서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서비스정책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서비스정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지원과

- ▶ 기본역량 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 시 유효 기간 동안 4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 (단, 기본역량 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 할 필요)

\* 사업별 요건은 '23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2.12월 초 공고 예정) 참조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인증기관\*의 경우에도 기본역량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2단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 예정

\* 인증유효기간 : 2020년 실적기관('21.1.1~'23.12.31) 및 2021년 실적기관('22.1.1~'24.12.31)

## 5-2. 기본역량심사 신청자격

□ (자격 요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 기본역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업별\* 신청자격은 「'23년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하나의 법인 아래 본·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별로 기본역량 심사 신청

□ (자격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1)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0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자

3)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반행위 등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2022년 9월 15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2022년 9월 15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 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위탁사업 참여 가능

### 5-3. 신청 및 접수

- 실적 기관: 2022년 5월 23일(월) 09:00 ~ 6월 10일(금) 18:00
- 신규 기관: 2022년 8월 01일(월) 09:00 ~ 8월 19일(금) 18:00

### 5-4. 신청방법

#### □ 접수처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신청서」 작성·제출(구비서류 포함)

①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② 기관회원 가입 → ③ 기관회원 로그인  
→ ④ 공고/신청 목록 → ⑤ 기본역량심사 공고 → ⑥ 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 ▶ (기관회원) 해당 기관 대표 계정으로 기관당 1개 계정 개설 가능
- ▶ 심사 일정 및 결과 통보 등을 위해 기관 업무 담당자 변경 혹은 담당자 연락처 변경 시 기관회원 정보 수정 필수

#### □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 ②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수행기관은 필수 제출 자료이며, 그 외는 제출 제외(신청서상 '기타'로 체크한 경우)
- ③ 「기관 현황서」 도 기본역량심사 신청·접수시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제출  
※ 단,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인증이 유효한 기관의 경우 미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본역량심사 설명회 동영상' 안내 참조

- 📁 관련 근거자료 미제출시 '기본역량 심사 참여 포기'로 간주(자료 미비 또는 미제출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 상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 기회 제공 가능(모든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기본역량심사 통과 후 기관 건전성심사시 국세 및 납세증명서, 신용수준 등의 자료는 별도 안내 후 제출

## 6

## 사업설명회

-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 6월 10일(금)
- 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
  - \* 코로나19 확산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현장 설명방식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부사항은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내용: 기본역량심사 개요, 심사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등

## 7

## 기본역량심사 기준 및 배점

## 7-1. 기본역량 심사 기준

-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선정기준\*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요건 마련에 기준을 두고 심사
  - \* 기본역량심사는 민간위탁사업기관 선정 및 우수기관인증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요건 및 수행역량에 중점
- 기본역량심사 대상기관을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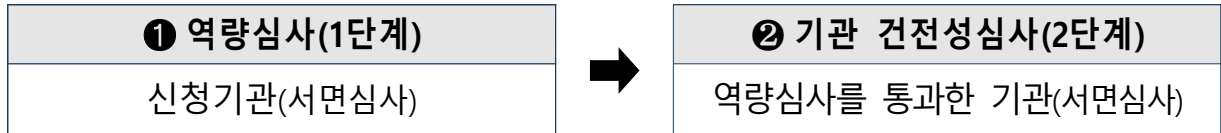
구분	세부 기준
실적기관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하여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신규기관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7-2. 기본역량 심사 구성

### ① 실적기관

- 단계별로 구분하여 역량심사(1단계)와 기관건전성심사(2단계) 실시
- 역량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만 기관건전성심사 실시



① [1단계 역량심사, 250점 만점]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점하여 점수에 따라 심사 결과 유효 기간 결정

- 실적기관은 4개 심사영역(기관경영·리더십, 서비스운영 및 관리, 사업실적, 인적자원관리)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로 실시 <단, 실적기관이라도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병행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D등급, 청년내일채움공제 하위 10%,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C등급

#### < 실적기관 역량심사 지표 >

심사영역	세부 심사항목
<b>기관경영, 리더십 (60)</b>	①민간위탁 기관책임자 관련 경력(10) ②고용서비스 동향 이해(20) ③민간위탁사업의 역할 이해(15) ④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중장기(3년) 발전계획 수립 (15)
<b>사업실적 (55)</b>	① 해당사업 수행실적 (30) ② 유사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 등 추진실적(25)
<b>서비스 운영 및 관리 (70)</b>	① 운영매뉴얼 수립(10) ②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개선(45) ③사례관리(15)
<b>인적자원관리 (65)</b>	① 업무역량관리 적절성(20) ②직무역량개발지원 적절성(10) ③인력활용의 체계성: 업무분장(20) ④임금관리 및 복리후생체계의 운영(15)

- 역량심사 통과 최저 점수는 100분의 60 (150점)으로 하되, 4개 심사영역 중 1개의 영역이라도 해당 심사영역 점수의 40% 이하인 경우 과락으로 처리

② [2단계 기관건전성 심사, 50점 만점] 재정건전성 및 법령위반 여부를 Pass 또는 Fail (30점 이하)\*로 서면(정량)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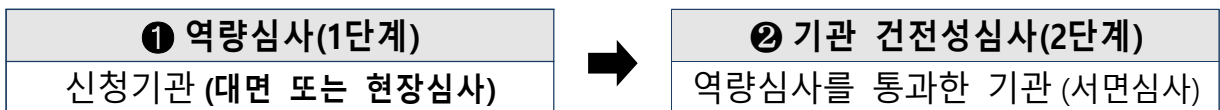
\* 총 50점 중 20점 감점으로 30점 이하인 경우 탈락

**< 실적기관 기관건전성 지표>**

심사영역	세부 심사항목									
<b>재정건전성, 법령위반여부 (50)</b>	<b>□ (준법성 분야) 처분일자 기준 2021년 1월 1일 ~ 2022년 8월 31일까지</b> 임금 등 금품체불·최저임금 위반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서면 심사평가 *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경고처분 효력이 재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감점 * 다음 연도 준법성 심사기준 기간은 2022. 9. 1. ~ 2023. 8. 31.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평가항목</th> <th>심사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td> <td>▶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td> </tr> <tr> <td>최저임금 위반 이력</td> <td>▶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td> </tr> <tr> <td rowspan="2">경고 처분</td> <td>▶ 구직자 개인 정보 무단 취급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10점 감점</td> </tr> <tr> <td>▶ 그 외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5점 감점</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항목	심사평가 기준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	▶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경고 처분	▶ 구직자 개인 정보 무단 취급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10점 감점	▶ 그 외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5점 감점
	심사평가항목	심사평가 기준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	▶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경고 처분	▶ 구직자 개인 정보 무단 취급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10점 감점								
		▶ 그 외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5점 감점								
	<b>□ (재정건전성 분야) 2022년 8월 31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신용 수준에 대해 서면 심사</b> ↳ 회계 및 재무 분야 관련 전문가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서면 심사평가 실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평가 항목</th> <th>심사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세금 체납 여부</td> <td>▶ 국세 체납 시 5점 감점   ▶ 지방세 체납 시 5점 감점</td> </tr> <tr> <td>고용보험료 체납 여부</td> <td>▶ 고용보험료 체납 시 5점 감점</td> </tr> <tr> <td rowspan="2">신용 수준</td> <td>▶ 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9~10등급 시 20점 감점</td> </tr> <tr> <td>▶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이하)** 시 20점 감점</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 항목	심사평가 기준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체납 시 5점 감점   ▶ 지방세 체납 시 5점 감점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 고용보험료 체납 시 5점 감점	신용 수준	▶ 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9~10등급 시 20점 감점	▶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이하)** 시 20점 감점
	심사평가 항목	심사평가 기준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체납 시 5점 감점   ▶ 지방세 체납 시 5점 감점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 고용보험료 체납 시 5점 감점									
신용 수준	▶ 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9~10등급 시 20점 감점									
	▶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이하)** 시 20점 감점									
* 신용등급이라 함은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신용평가기관에서 산정한 등급을 의미함 ** 완전자본잠식은 적자로 인해 이월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0 미만)인 상태를 말함										

**2 신규기관**

- 단계별로 구분하여 역량심사(1단계)와 기관건전성심사(2단계) 실시
- 역량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만 기관건전성심사 실시



- \* 신규기관의 경우 8월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에 대한 신규기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
- \*\* 사업운영 이력이 없는 신규기관으로서 현장심사가 어려운 경우, 심사장을 방문하여 대면 심사 진행 가능

**① [1단계 역량심사, 250점 만점] 세부 심사항목별로 배점하여 점수에 따라 심사 결과 유효 기간 결정**

○ 신규기관은 3개 심사영역(기관경영·리더십, 서비스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 대면 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되

- 유관사업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점의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신규기관 역량심사 지표 >**

심사영역	세부 심사항목
기관경영, 리더십 (75)	①민간위탁 기관책임자 관련 경력(10) ②고용서비스 동향 이해(20) ③민간위탁사업의 역할 이해(25) ④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중장기(3년) 발전계획 수립 (20)
서비스 운영 및 관리 (90)	①운영매뉴얼 수립(15) ②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개선(50) ③사례관리(25)
인적자원관리 (85)	①업무역량관리 적절성(20) ②직무역량개발지원 적절성(10) ③인력활용의 체계성: 업무분장(35) ④임금관리 및 복리후생체계의 운영(20)
가점(10)	- 유관사업운영 이력 수준(10)

○ 역량심사 통과 최저 점수는 100분의 60 (150점)으로 하되, 3개 심사영역 중 1개의 영역이라도 해당 심사영역 점수의 40% 이하인 경우 과락으로 처리

② [2단계 기관건전성 심사, 50점 만점] 재정건전성 및 법령위반 여부를 Pass 또는 Fail (30점 이하)\*로 서면(정량) 심사

\* 총 50점 중 20점 감점으로 30점 이하인 경우 탈락

**< 신규기관 기관건전성 지표>**

심사영역	세부 심사항목									
재정건전성, 법령위반여부 (50)	□ (준법성 분야) 처분일자 기준 2021년 1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금 등 금품체불·최저임금 위반 및 경고 처분에 대한 서면 심사평가 *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경고처분 효력이 재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감점 * 다음 연도 준법성 심사기준 기간은 2022. 10. 1. ~ 2023. 9. 30.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평가항목</th> <th>심사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td> <td>▶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td> </tr> <tr> <td>최저임금 위반 이력</td> <td>▶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td> </tr> <tr> <td rowspan="2">경고 처분</td> <td>▶ 구직자 개인 정보 무단 취급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10점 감점</td> </tr> <tr> <td>▶ 그 외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5점 감점</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항목	심사평가 기준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	▶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경고 처분	▶ 구직자 개인 정보 무단 취급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10점 감점	▶ 그 외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5점 감점
	심사평가항목	심사평가 기준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	▶ 임금 등 금품체불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경고 처분	▶ 구직자 개인 정보 무단 취급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10점 감점								
		▶ 그 외 사유로 인한 처분은 1건당 5점 감점								
	□ (재정건전성 분야) 2022년 9월 30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신용 수준에 대해 서면 심사 ↳ 회계 및 재무 분야 관련 전문가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서면 심사평가 실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평가 항목</th> <th>심사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세금 체납 여부</td> <td>▶ 국세 체납 시 5점 감점 ▶ 지방세 체납 시 5점 감점</td> </tr> <tr> <td>고용보험료 체납 여부</td> <td>▶ 고용보험료 체납 시 5점 감점</td> </tr> <tr> <td rowspan="2">신용 수준</td> <td>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9~10등급 시 20점 감점</td> </tr> <tr> <td>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이하)** 시 20점 감점</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 항목	심사평가 기준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체납 시 5점 감점 ▶ 지방세 체납 시 5점 감점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 고용보험료 체납 시 5점 감점	신용 수준	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9~10등급 시 2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이하)** 시 20점 감점
	심사평가 항목	심사평가 기준								
세금 체납 여부	▶ 국세 체납 시 5점 감점 ▶ 지방세 체납 시 5점 감점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 고용보험료 체납 시 5점 감점									
신용 수준	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9~10등급 시 2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이하)** 시 20점 감점									
* 신용등급이라 함은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신용평가기관에서 산정한 등급을 의미함										
** 완전자본잠식은 적자로 인해 이월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0 미만)인 상태를 말함										



## 8 기본역량심사 결과 공개

### □ 기본역량 심사 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접수

- [기본역량 심사 결과]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
  - 실적기관: 2022년 10월 1주 예정
  - 신규기관: 2022년 11월 1주 예정
- [이의신청]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 부여

\* (이의신청기한 및 방법) 기본역량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세부절차) 기본역량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의신청기관 대상 재심사 실시 여부 결정

- [최종 결과 공고]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

## 9 유효기간

- 기본역량 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실적기관 중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한 기관의 경우에는 3년임
- 단,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도 그 기간 동안 1단계인 역량심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2단계 기관건전성심사 및 신청자격 요건 검증은 매년 받아야 함

## 10 기타사항

- 기본역량심사 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위조·변조되거나 허위 기재되는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역량심사 통과를 취소할 수 있음
- 입문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5월 4주, 입문컨설팅 제공: 5.30.~6.30. 예정)
  -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본역량심사 접수 전 사전에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문 컨설팅 제공
  - \* 기본역량심사 개요, 민간위탁 사업공고문 해석 및 신청절차 등 신청 가이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우수사례 소개 등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043-870-8381, 828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11 문의처

- 법령 및 정부정책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044-202-7673 / 7677
-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043-870-8801 / 8280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